

# 서울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홍국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83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홍국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 석,  
신복자, 우형찬, 유만희,  
윤기섭, 이원형, 채수지,  
최민규, 최진혁 의원(23  
명)

## 1. 제안이유

-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등과 같이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공익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기 과도하고, 패소시에는 원고 측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제도의 한계로 인해 공익소송의 제기 자체가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시민의 권리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민이 제기하는 공익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토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1조, 제2조)
- 나. 공익소송비용의 지원대상 및 시기, 지원방안 등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5조)

다. 서울특별시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1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소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 중 시민의 공익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익소송지원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한 소송을 말한다.

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시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환경 등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소송의 주된 목적과 쟁점인 사건

나. 해당 사건의 판결이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다.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

2. “공익소송비용”이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종결 또는 확정 시까지 소요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보수

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등 그 밖의 비용

다. 패소시 부담하는 소송비용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해당 공익소송을 제기할 당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② 시는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공익소송을 통한 시민의 권익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관할 행정청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하는 소송, 형사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시기) ① 공익소송비용은 소송이 확정된 이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의 각 심급 판결(심급의 판결이 각각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이 선고된 이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 청구인의 경제 사정상 소송비용 부담이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선지원을 받을 경우, 청구인은 판결 선고 이후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결과보고서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 ① 시는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소송 확정 시 승소 또는 패소의 판결 이유
2.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지원 신청액의 적정성
3.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여부
4. 소 제기가 반복적이거나 악의적 의도가 없을 것

②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소송이 확정된 이후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익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사건의 심급별로 1,000만원 이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법원이나 상대방 등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반환받거나 회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서울특별시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익소송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 공익소송비용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그 밖에 행정·회계·세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소송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소송

② 소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공익소송비용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환수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익소송비용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중복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소송이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시기)	△	○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현시점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2	제5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	△	○ 공익소송사건의 심급별로 10,000천원 이내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하지만, 지원기준 및 대상인원이 정확하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3	제8조~제9조 제14조	△	○ 위원회 위원구성 및 개최주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공익소송비용을 위한 지원대상·시기 그리고 위원회 위원 구성 등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다만,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울시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함

※ 참고자료 : 위원회 운영 비용추계 산출내역(당연직 위원 2인, 위촉직 위원 8인, 연 2회 개최)

○ 위원회 운영 비용추계 산출비용 = 19,000천원

= 참석수당 + 업무추진경비

= 16,000천원 + 3,000천원

① 참석수당 = 16,000천원

= 수당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200천원×8명×2회×5년 (당연직 2인 제외)

※ 참석수당 단가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② 업무추진경비= 3,000천원

= 경비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30천원×10명×2회×5년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